

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

함양군과 농협중앙회함양군지부(이하 '양 기관'이라 한다.)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,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함양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사항) 양 기관의 협력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【협력 사항】

- 1)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
- 2) 고향사랑기부제 대외홍보단 구성 및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
- 3)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함양지역 농축산물 발굴·공급을 통한 기부자 만족도 제고 및 함양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4) 국민 기부 편의 제고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금융기관(창구) 수납 협력
- 5)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자료의 제공 등) 양 기관은 제2조의 협력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.

제4조(자료의 이용 및 비밀유지) 양 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정보 제공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,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해석)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(효력) ①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,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② 이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대 기관 측에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서로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제7조(개정) 이 협약의 내용은 양 기관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서 보관)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년 9월 16일



함양군

군수 진병영

농협중앙회

함양군지부

지부장 최윤만